폭력적인 피케팅의 책임 귀속과 파업권의 침해 여부[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로 2010. 9. 29. 이루어진 스페인 총파업[2)]에서 청구인이 주도한 약 100명의 피케팅[3)]의 한 무리가 이 사건 음식점을 습격,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신체적 및 물질적 손해에 대해 2013. 1. 18. 알바세테 단독법원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청구인에게 816.82유로를 배상하도록 명하였다. 우선, 신체적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255.82유로에 관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면 피케팅의 불특정 구성원들(integrantes indeterminados del piquete)에 의해 공격이 있었고, 청구인이 피케팅의 주도자 내지 리더였으며, 이루어진 불법적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묵인한 점을 들어 청구인에게 민사책임을 부과하였다. 다음으로 음식점 폐쇄로 입은 영업 손실에 따른 물질적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561유로에 관하여, 당해 판결에서는 신체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과 관계없이 청구인 자신의 행위(acto propio)에 따른 책임이고, 당시 경찰관에 따르면 청구인과 음식점 주인이 격렬하게 논쟁 중이었고 청구인이 모욕[4)]을 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필사적으로 음식점을 닫으라고 선동[5)]하였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헌법 제28조 제2항[6)]의 정당한 파업권(derecho a la huelga)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상기 판결에 대해 청구인은 동 법원에 부수적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3. 5. 각하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19. 이 역시 각하되었다.

---

1) 전원재판부 2016년 4월 14일 결정, 판례번호 69/2016.
2) 2010년 스페인 총파업(huelga general)은 공공부문에서의 임금감축, 연금동결에 관한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노동자위원회(CC.OO.)와 노동자총연맹(UGT)의 주도 하에 스페인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이밖에 브뤼셀, 그리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총파업이 있었다.
3) 피케팅(picketing)이란 노동 쟁의 때에 조합원들이 공장이나 사업장의 출입구에 늘어서거나 스크럼을 짜서 파업의 방해자를 막고 동료 가운데 변절자를 감시하는 것으로 파업 또는 보이콧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보조수단으로 행해진다. 매일경제용어사전 참조.
4) 직역하면 “나쁜 놈, 개 자식아 문 닫아, 거기서 뭐해”.
5) 한편 음식점에서 폭죽의 일부와 깨진 잔이 발견되었다.
6) 헌법 제28조 제2항: 노동자에게는 그 이익보호를 위하여 파업권이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사회적 급부 유지에 필요한 보장들을 정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케팅의 지도자에게 제3자에 의해 야기된 피해에 관한 민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파업권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restricción injustificada)이며, 또한 향후 파업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효과(efectos disuasorios)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2013. 6. 12.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였다.[7]

2. 결정요지

(1) 법정의견

1) 이 사건 민사책임이 발생하게 된 청구인의 행위 -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한 신체적 공격과 모욕 - 는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측면에서 파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밝힌 "의사전달, 설득, 압력의 자유로운 실현을 보장하고자 질서정연하게"라는 헌법상 보호되는 한계(los límites constitucionalmente protegidos)를 넘어서는 것이다.[8] 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들로 야기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데, 피해를 입은 자들 또한 다른 헌법적 권리(가령, 헌법 제15조의 생명권과 신체적·정신적 완결성의 권리, 헌법 제35조 제1항의 근로의 자유, 헌법 제38조의 기업의 자유)의 주체가 됨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어떤 경우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각각의 경우 이러한 책임을 지게 되는 이들의 기본권도 존중되어야(ha de ser respetuosa) 함은 분명하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파업에 관한 현행법에는 집회의 자유의 행사시 발생한 손해에 관련된 규정(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직법 제4조 제3항)[9]과 같은

7) 마찬가지로 검찰도 파업권의 침해에 따른 청구인의 재판소원을 인용해 줄 것을 의견서로 제출하였다.
8) 제2부 1997년 7월 21일 결정, 판례번호 137/1997.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민사책임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에 관한 헌법적인 논쟁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의 원인이 된 행위가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이에 따른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책임 귀속에 관한 충분한 내용 없이 파업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헌법적인 관점에서 파업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선고된 민사책임의 부과가 헌법 제28조 제2항의 파업권을 존중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기준과 이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 제3항[10]에 따라 일반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은 재심(jurisdicción revisora)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법률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다만 헌법소원심판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본권 또는 공적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몇 차례 판시한 바 있다.[11]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해 판결에서 민사책임이 부과된 것에 대한 일반법원의 판단재량(el margen de apreciación del órgano judicial)을 존중하고 이를 해함이 없이, 단지 이것이 파업권의 내용에 침해적 효과(efecto lesivo)를 갖는지 또는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결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은 민사책임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헌법재판소가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인 피케팅으로 인한 형사책임 내지 노동법상의 책임에 대해 심판하였던 것과는 다른 영역에 해당된다. 유의미하게, 형사상 불법행위에 따

9) 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직법 제4조 제3항: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제3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보충적으로, 주최한 자연인 또는 법인, 집회 또는 시위의 주모자는, 책임이 반복 부과되는 것과 관계없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참가자들이 제3자에 대해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10) 헌법 제117조 제3항: 모든 절차,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사법권의 행사는, 권한과 절차 규정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Juzgado)과 재판소(Tribunal)에 배타적으로 속한다.

11) 제2부 1999년 9월 27일 결정, 판례번호 165/1999; 제2부 1983년 6월 29일 결정, 판례번호 58/1983; 제1부 2013년 9월 9일 결정, 판례번호 151/2013.

른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 헌법 제25조 제1항[12]의 자기책임의 원칙(el principio de personalidad de la pena)이 고려된다. 헌법재판소는 254/1988 결정[13]을 통해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인 피케팅에 대한 형의 부과는 "불법행위에 따른 개별화(individualización)에 의해 이루어져야지, 범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해 부과하여 이들 중 어느 누구든 유죄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형사판결의 결론과는 관계없이, 민사책임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헌법적 요청을 구성하지 않는다(no constituye una exigencia constitucional).

또한 노동법상의 책임과 관련된 사건[14]의 경우, 근로계약이 전제가 되어 일반법원은 징계 받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판단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인 피케팅의 행위와 근로계약과의 관계에 관하여, 노동법원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주체별로 각각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해고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법원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헌법상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더 적정한 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계약책임이 아닌) 위력적이거나 폭력적인 피케팅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다투는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누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니는지 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헌법재판소의 선례에서 일치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동 재판소원이 갖는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la especial trascendencia constitucional, 헌법재판소조직법 제50조 제1항 b])[15]을 고려할

12) 헌법 제25조 제1항: 누구든지 당시 현행법에 의거하여, 사건발생시 범죄, 과실 또는 행정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소추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13) 제2부 1988년 12월 21일 결정, 판례번호 254/1988.
14) 제2부 1994년 12월 19일 결정, 판례번호 332/1994.
15) 헌법재판소조직법 제50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은 사전심사의 대상이 된다. 지정재판부는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는 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수리결정을 내린다.

때, 헌법재판소는 다른 관점(una perspectiva distinta)에서 위력적이거나 폭력적인 피케팅에 따른 민사책임의 부과가 파업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3) 당해 판결에서 고려한 사항과 결론이 헌법 제28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권과 조화를 이루는지 판단하기 위해, 당해 판결에서 이루어진 분석과 달리, 청구인에게 부과된 민사책임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본 재판부는 당해 판결에서 확립된 사실에 기초하여(헌법재판소조직법 제44조 제1항 b])[16], 법원이 내적 확신에 이르게 된 증거의 평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지 않는다.[17]

ⓐ 신체적 손해(daños personales)에 대한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당해 판결에서 음식점 주인이 분명 피케팅의 불특정 구성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고, 최종적으로 해당 구성원들이 경찰에서 확인이 안 되었지만, 당사자들 간에 가장 대립되는 쟁점이 타인의 행위(hecho ajeno)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경찰관에 따르면, 청구인이 확성기를 가지고 있었고 약 100명의 사람들을 결집하고 지휘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에 기초하여, 당해 판결에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나 제3자가 형법 제315조[18]의 유죄를 받게 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민사책임에 관한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에도 민사상 불법행위(ilícito civil)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발생한 신체적 손해에 대해 청구인에게 민사책임을 부과하였다. 또한

b) 헌법소원의 내용이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에 관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하고, 그 중요성이 헌법해석, 적용이나 일반적 효력,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16) 헌법재판소조직법 제44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자유의 침해가, 법원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할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b)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과 별개로, 법원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로 권리 내지 자유의 침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중이지 않을 것

17) 제2부 2002년 9월 30일 결정, 판례번호 170/2002; 제1부 2008년 1월 31일 결정, 판례번호 15/2008.

18) 형법 제315조: ① 필요 상황의 남용 또는 기만을 통해, 단결의 자유나 파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 또는 6개월에서 12개월의 벌금형(일수벌금제에 해당)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1년 9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 또는 18개월에서 24개월의 벌금형에 처한다.
③ 단체나 개인으로 행동하는 자가, 다른 이들과 동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파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1년 9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 또는 18개월에서 24개월의 벌금형에 처한다.

당해 판결에서는 손해의 원인과 개인 또는 법인 간 상호관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는 유연한 사법해석의 대상(objeto de una interpretación jurisprudencial flexible)이 되며, 법적 또는 사실적 관계가 있는 경우이거나 행위자가 종속되는 - 일시적이거나 산발적인 경우 포함 - 상황에 처해있거나 아니면 이 사건의 청구인과 같이 불법행위를 행하는 자가 민사책임을 묵인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당해 판결에서 인용하였던 판결을 자세히 보면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에게 보충적인(subsidiaria) 민사책임을 지도록 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당해 판결의 판단이유에서 청구인에 대한 책임부과와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연관성에 대한 언급 없이, 피케팅의 리더로 행동한 자에 대해 직접적인(directa) 민사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당해 판결에서 부과된 신체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은 음식점 주인이 입은 상해에 전적으로 기반을 두는 것이고, 실질적인 책임의 증명이라든가 폭력의 실행을 교사하였다는 입증은 없었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청구인의 묵인 또는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부과되었다. 물론 당해 판결의 내용과 경찰관의 진술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이 음식점 주인에 대해 모욕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나, 타인의 행위로 발생한 폭력에 대해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존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피케팅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민사책임을 부과하려면 일반법원은 피해를 야기한 구성원 각 개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피케팅의 구성원 내지 리더의 지위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민사책임을 부과하기에 충분하거나 헌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피해의 원인이 되는 폭력의 실행에 가담하였거나 참여하였다는 입증 없이 피케팅의 리더라는

이유로, 당해 판결에서 오로지 청구인에게만 신체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헌법 제28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권에 반한다.

ⓑ 반면 음식점 폐쇄로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물질적 손해(daños materiales)에 대한 민사책임은 (앞서 설시되었던 신체적 손해와는) 달리 고려되어야 한다. 당해 판결에서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참고하여 그의 행동과 음식점 폐쇄 사이의 연관성을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발생한 물질적 손해가 청구인 자신의 행위(acto propio)에 기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에 따르면, 습격이 이루어진 장소를 조사할 당시에 청구인과 음식점 주인이 격렬하게 논쟁 중이었고, 청구인이 주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여러 증인들이 진술하기를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계속해서 식당을 열어두려고 했으나, 청구인이 그 주인을 향해 필사적으로 해당 음식점을 닫으라고 선동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판사는 청구인의 행위가 파업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음식점 폐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부과하였다.

상기와 같은 법원의 판단과 이 부분에 관한 헌법적 이론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파업권의 보호범위 밖에 있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통해 파업에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들의 근로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파업으로 이어지는 갈등의 상황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 - 특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측면 - 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고, 이때 자신들의 의사전달, 권유, 압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데 있어 평상시와 같이 정중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19] 그렇지만 또한 헌법재판소는 "파업권을 행사하면서 폭력이나 강제를 통해 제3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가능성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

19) 제2부 1997년 7월 21일 결정, 판례번호 137/1997.

할 수 없고, 근로의 자유, 기업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정신에 대한 완전성의 권리와 같이 헌법상 보호되는 다른 권리 내지 이익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지휘하고 주도한 대규모의 폭력적인 피케팅으로 조성된 위협적인 정황을 당해 법원에서 고려하였고, 이때 음식점 주인에 대한 모욕행위는 이 파업에 다른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 음식점 폐쇄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결국 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28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권의 한계에 위배되고, 부당한 방법에 의해 헌법상의 다른 권리와 이익을 제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문

헌법소원을 부분적으로 인용한다(estimar parcialmente):

첫째, 파업권(헌법 제28조 제2항)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다.

둘째, 신체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알바세테 단독법원의 판결들을 무효로 선언한다.

(3) 반대의견

Adela Asua Batarrita, Fernando Valdés Dal-Ré 재판관 - 전체인용의견

법정의견은 청구인이 피케팅을 지휘하고 주도하였고 음식점 폐쇄가 청구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물질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이 부과된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민사책임을 전가하면서 개별적인 각 개인의 행위가 고려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

20) 제2부 1994년 12월 19일 결정, 판례번호 332/1994; 제2부 1994년 12월 19일 결정, 판례번호 333/1994; 제2부 1995년 2월 13일 결정, 판례번호 40/1995; 제3지정재판부 1989년 1월 23일 불수리결정, 판례번호 36/1989.

과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이라든지 갈등 상황에 대한 전후 맥락의 고려가 없었다.

파업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갈등의 표현은 집단행동과 당연히 관계가 있고, 이때 주로 표현을 공개하거나 외부로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지지를 구하거나 반대를 극복하려는 것도 포함됨을 간과할 수 없다. 여하간 이 결정의 주문으로 헌법 제28조 제2항에서 파업권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 단체의 이익을 방어하고 증진하려는 취지가 위축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Juan Antonio Xiol Ríos 재판관 - 전체인용의견

법정의견에서 청구인이 피케팅의 리더라는 이유로 신체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유가 불충분하다며 청구인의 파업권 침해를 인용하였는데, 물질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적용했어야 했다.

Encarnación Roca Trías 재판관 - 기각의견

파업권을 규율하는 법률 조항이 없으므로, 당해 법원은 민법을 적용하여 특히 부진정연대책임(solidaridad impropia)에 따라, 단체의 불특정 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들 중 누구에게나 아니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또는 비율을 정해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민사책임이 부과된 것이 파업권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파업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였고(ejerció abusivamente), 이러한 경우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파업권의 무제한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